

제17조제1항 중 “영 제12조의2제2항”을 “영 제12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2조의2제3항”을 “영 제12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공제부금”을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과 공제부금”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20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공제부금 납부 금액을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을 통해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환경부령 제889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6일

환경부장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신청한 관측 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공인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3. 외국의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교정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 ⑤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 기준을 충족하는 관측 장비에 별표 2에 따른 검정증인을 표시해야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조의4(검정장비의 성능·규격 등의 기준) 영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검정장비의 성능·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3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지진통보 및 지진조기경보”를 “국내외 지진정보, 지진조기경보 및 지진속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진해일주의보”를 “지진해일정보, 지진해일주의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발생위치 및 규모”를 “발생위치, 규모, 진도 및 발생깊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및 지진해일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중전의 제13호) 중 “제11호까지”를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14.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9조제1항 중 “기상청장[「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을 “기상청장(영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를 “기상청장 또는”으로, “때에는 현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중전의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측소의 관측 장비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관측 장비: 2021년 12월 31일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 2022년 12월 31일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 2023년 12월 31일
4.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 2024년 12월 31일
5. 2019년 1월 1일 이후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관측 장비: 2025년 12월 31일

[별표 1]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가속도지진센서의 검정 기준

검정 유형	검정 항목	
가. 실내검정	1) 성능검정	감도, 주파수 응답, 선형성
	2) 구조검정	수평 표시기 및 조절기의 부착 여부, 센서규격의 표시 여부, 진북 방향 표시 여부, 검증코일 유무
	3) 기능검정	명목감도와 측정감도의 편차
나. 현장검정	성능검정	감도(지표형), 입출력반응(지표형, 시추형)

2. 속도지진센서의 검정 기준

검정 유형	검정 항목	
가. 실내검정	1) 성능검정	감도, 주파수 응답, 선형성
	2) 구조검정	수평 표시기 및 조절기의 부착 여부, 센서규격의 표시 여부, 진북 방향 표시 여부, 검증코일 유무
	3) 기능검정	명목감도와 측정감도의 편차
나. 현장검정	성능검정	입출력반응(지표형, 시추형)

3. 지진기록계의 검정 기준

검정 유형	검정 항목	
가. 실내검정	1) 성능검정	시각오차, 전압 안정도, 전압 선형성
	2) 구조검정	채널수, 위성항법장치(GPS) 안테나의 작동 여부
	3) 기능검정	디지털변환 기능의 정도, 샘플링 기능의 정도, 연속 관측자료의 누락 정도
나. 현장검정	성능검정	시각오차, 전압 안정도, 전압 선형성

비고

1. “실내검정”이란 기상청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실에서 검정장비와 기준기로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검정”이란 지진 관측 장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이동식 검정장비와 기준기로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검정 항목별 세부적인 검정 방법 및 공차(公差: 허용 오차의 범위)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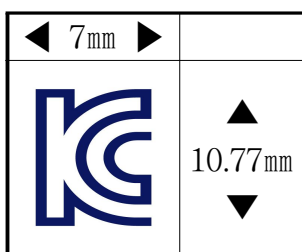
[별표 2]

검정증인(제3조제5항 관련)

1. 검정증인의 내용 및 규격

◀ 60mm ▶		
검정 내용		▲ 40mm ▼
검정번호	제 호	
관측 장비의 제작번호	호	
검정연월일	년 월 일	
검정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검정기관명		
◀ 30mm ▶	◀ 30mm ▶	

2. 검정증인 고무인의 규격



[별표 2의2]

검정장비의 성능·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제3조의4 관련)

검정대상 관측 장비의 종류			성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1. 가속도지진 센서	가. 기본 검정장비	1) 진동발생기	주파수의 측정 범위는 0.1 Hz ~ 100 Hz 성능 이상 수평 가속도의 발생 범위는 0.5 m/s ² ~ 10 m/s ² 성능 이상 수직 가속도의 발생 범위는 0.5 m/s ² ~ 10 m/s ² 성능 이상
		2) 경사계(수평에서 기울임 각도를 잴 수 있는 기기)	0° ~ 360°의 각도 범위로 기울일 수 있는 장비
		3) 지진기록계	전압의 입력 범위는 40 Vp-p(gain=1에서) 성능 이상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환은 24 bit 성능 이상
	나. 이동식 검 정장비	1) 이동형 진동발생기	주파수의 측정 범위는 1 Hz ~ 10 Hz 성능 이상 수평 가속도의 발생 범위는 0.5 g ~ 1 g 성능 이상
		2) 경사계	0° ~ 360°의 각도 범위로 기울일 수 있는 장비
		3) 지진기록계	전압의 입력 범위는 40 Vp-p(gain=1에서) 성능 이상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환은 24 bit 성능 이상
	다. 기준기	1) 가속도측정기	측정 범위가 ±0.25 g ~ ±4 g 성능 이상
		2) 레이저진동측정기	레이저 해상도는 0.1 μm/s 이하 주파수의 측정 범위는 0.01 Hz ~ 100 Hz 성능 이상
		3) 멀티미터(전자계측기)	직류 분해능은 100 nV 성능 이상 전압의 측정 범위는 100 mV ~ 100 V 성능 이상
		4) 각도기	0° ~ 360°의 각도 범위에서 0.1°의 해상도로 측정하는 기기

2. 속도 지진센서	가. 기본 검정장비	1) 진동발생기	수평 주파수의 측정 범위는 0.1 Hz ~ 100 Hz 성능 이상 수평 속도의 발생 범위는 2 mm/s ~ 400 mm/s 성능 이상 수직 속도의 발생 범위는 2 mm/s ~ 200 mm/s 성능 이상
		2) 지진기록계	전압의 입력 범위는 40 Vp-p(gain=1에서) 성능 이상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환은 24 bit 성능 이상
	나. 이동식 검 정장비	지진기록계	전압의 입력 범위는 40 Vp-p(gain=1에서) 성능 이상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환은 24 bit 성능 이상
		다. 기준기	1) 레이저진동측정기
	2) 멀티미터		직류 분해능은 100 nV 성능 이상 전압의 측정 범위는 100 mV ~ 100 V 성능 이상
	3. 지진 기록계	가. 기본 검정장비	1) 위성항법장치 수신기
2) 지진기록계			전압의 입력 범위는 40 Vp-p(gain=1에서) 성능 이상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환은 24 bit 성능 이상
나. 이동식 검 정장비		1) 시각동기화 장치	최대 샘플링률은 1 MS/s 성능 이상
		2) 지진기록계	전압의 입력 범위는 40 Vp-p(gain=1에서) 성능 이상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환은 24 bit 성능 이상
다. 기준기		1) 함수발생기	주파수의 해상도는 1 μ Hz 이하 주파수의 정확도는 ± 3 ppm 이내 최대출력전압은 10 Vp-p(50 Ω 에서) 성능 이상
		2) 가속도측정기	측정 범위가 ± 0.25 g ~ ± 4 g 성능 이상
		3) 원자시계	출력 간격의 해상도는 1 pps(10 MHz에서) 성능 이상 소재는 루비듐(rubidium) 이상
		4) 전압표준기	10 V 출력 안정성은 ± 2 ppm 이내
		5) 멀티미터	직류 분해능은 10 nV 성능 이상

[별표 2의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의3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검정대행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관측 장비 검정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3제1항 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3제1항 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2대 이상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당 1일, 현장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장소 당 2일의 처리기간을 각각 가산합니다.
------	------	---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소	

신청내용	관측 장비의 종류	제작회사	규격 (모델명)	제작연월일	제작번호	설치장소 (현장검정 신청 시 상세 주소 기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측 장비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기상청장

[] 검정대행기관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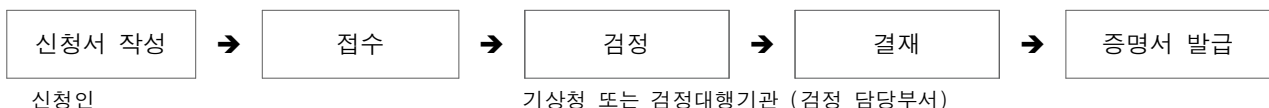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	----	-----	----------------------

수수료

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제 호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3. 성명(대표자):
4. 전화번호:
5. 주소:
6. 제작회사:
7. 규격(모델명):
8. 제작연월일:
9. 제작번호:
10. 비고(설치장소):

위 관측 장비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검정한 결과, 검정 기준을 충족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기상청장

[] 검정대행기관의 장

직인

※ 붙임 : 관측 장비 검정성적서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5년입니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표자 주소		
	사무소 소재지		
	검정 분야		
	업무 개시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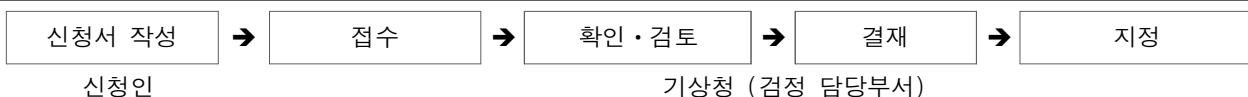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정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제 호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 1. 상호:
- 2. 대표자 성명:
- 3. 대표자 주소:
- 4. 사무소 소재지:
- 5. 지정사항:
- 6. 업무 개시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를 통해 관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제작·수입 또는 설치하는 자가 그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기상청장의 검정(檢定)을 받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과 검정수수료를 정하고,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20-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7-21호(관보 제19039호, 2017. 6. 28.)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부고시 제2019-13호(간보 제19527호, 2019. 6. 20.)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사단 구)캠프 그리브스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경기도의 캠프 그리브스 활용계획에 따른 육군 0사단 구)캠프 그리브스 일부시설 이전사업(기부 대양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과주시 군내면 백연리 227번지 등 75필지 / 259,361㎡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 2017. 6. 28. ~ 2020. 12. 31.
 - 변경 : 2017. 6. 28. ~ 2021. 6. 30..
 - 사유 : 코로나19 확산,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경기도지사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 연 락 처 : 031-8030-266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 토지 세목은 국방부고시 제2017-21호 및 국방부고시 제2019-13호를 참고하시고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담당자(☎ 031-8030-2663)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